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14호
- 제출자 : 홍순복 의원 외 8명
- 제출일 : 2018년 1월 18일
- 회부일 : 2018년 1월 22일

### 2. 제안이유

-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기 보급은 지원되고 있으나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가 없어 불편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과 수리·지원 신청 절차를 정함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수리센터 위치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마. 부당한 수리비용 청구의 환수 및 지원제한 내용을 정함 (안 제8조)
- 바.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조례안(붙임1)

나. 관계법령(붙임2)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5조(장애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다. 비용추계서(붙임3)

라. 입법예고 : 2017. 12. 27. ~ 2018. 1. 8.(12일간)

- 제출된 의견(붙임4) 및 부서 검토의견(붙임5)

### □ 부서 검토의견

□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조례안 시행시 예상 문제점 : 해당사항 있음

-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11조제7호에 의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안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항과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항은 그 규정상 지원 내용 중복으로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은 행·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됨
-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의 기존 사업에 시설장비 및 수리 인력 등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 및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가 요구됨

□ 조례안 시행시 주무부서 : 노인장애인과

□ 조례안 시행시 재정부담 및 예산관련 사항 : 의견 있음

- 수리센터 신규 설치·운영 시 센터기반 시설 정비 및 차량구입 등 초기 비용으로 1억9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에 대해 수리비용 지원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장애인 권리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법률적 검토사항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제2항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조기기 연구 개발의 지원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상충 또는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

안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동기기 수리업무의 특성상 안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 판단됨.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탁운영 및 지정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 및 사고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우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서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리센터의 신규 설치·운영시 초기비용이 과다하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이상과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관련법에 적정하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15호
- 제출자 : 나정숙 의원 외11명
- 제출일 : 2018년 1월 18일
- 회부일 : 2018년 1월 22일

### 2.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3. 주요내용

- 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나.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 (안 제4조)
- 다. 복지계획과 연계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수립과 내용을 정함.  
(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제6조)
- 마. 지원사업과 중지 사유를 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

바. 공공근로사업에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나 청소년 한부모가 우선 고용하는 노력의무를 정함 (안 제9조)

사.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조례안(붙임1)

나. 관계법령(붙임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의2(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다. 비용추계서(미첨부) :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 : 2017. 12. 27. ~ 2018. 1. 8.(12일간)

-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붙임6)

### □ 검토 의견(여성가족과)

#### 1.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 개정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현 조례안의 지원대상자 범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2. 조례안 시행시 재정부담 및 예산관련 사항

- 비용추계서(붙임3 참조) : 38,250천원(2017년 대비 255세대 증가)

#### 3. 예상되는 문제점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후 개정이 필요함.
  - ▣ 보건복지부와 협의시 2~3달 정도의 시일이 소요됨.
  - ▣ 타 법령의 의한 중복지원 및 대상자 범위 확대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함.

○ 예산 증액 및 재정부담

▣ 2018년 본예산 대비 38,250천원 증액이 필요함.

#### 4. 주무부서 검토의견

○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 후 개정이 필요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현 조례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입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됨.

#### 5. 조문 수정 의견

구분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안	검토의견
6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지원대상자 범위를 현 조례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입법하고자 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시장의 책무와 차별금지 및 한부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조례의 범위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였고, 추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이행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법리적 문제가 없고,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반영 하였으므로 조례 운용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